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1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비·보완하고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금고 선정기준에 탈석탄 ‘녹색금융’ 실천여부를 반영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사회적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및 서울시 조례 등 개정사항 반영
 - 1) 금고지정 평가기준으로 별표로 정하는 그 밖에 사항 신설(안 제5조)
 -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의 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줄이고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추가하여 2점을 배정.
 - 3) 평가항목 신설 및 배점기준 변경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신설

○ 불필요한 규정 삭제·보완 및 용어 정비 등 미비점 보완

- 1) 중복 규정 삭제(안 제4조)
- 2) 별지의 “구민의 이용 편리성”을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로 평가항목 문구 구체화
- 3) [별표2]의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로 변경하여 [별표1]에 따른 평가항목과 일치하도록 수정

3. 의견제출

○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재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재무과(전화: 02-3396-5032, FAX: 3396-8674, E-mail: dale_zzz@junggu.seoul.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142조”를 “제159조”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예금 금리”를 “예금금리”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구민의 이용 편의성”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을 “금고업무 관리능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

별표1과 별표2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 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5 (8)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18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6. 그 밖에 사항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평가 세부항목별 금융기관의 순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 하한을 배점 상한의 6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제2호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1)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하여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평가 가능
 - 2)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설치 대수 (7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8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점)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만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구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에 사항 (2점)

가. 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

금융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4. ----- ----- ----- 제159조 ----- -----</p>
<p>제4조(금고의 수 및 지정)</p> <p>④ <u>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u></p>	<p>제4조(금고의 수 및 지정)</p> <p>④ <삭 제></p>
<p>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p> <p>② (생략)</p> <p>1. (생략)</p> <p>2. 구에 대한 대출 및 <u>예금금리</u></p> <p>3. <u>지역주민 이용 편의성</u></p> <p>4. <u>금고 업무 관리 능력</u></p> <p>5. (생략)</p> <p>6. <u><신 설></u></p>	<p>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구에 대한 대출 및 <u>예금금리</u></p> <p>3. <u>구민의 이용 편의성</u></p> <p>4. <u>금고업무 관리능력</u></p> <p>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1로 정하는 사항</u></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1)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 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21)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20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및 구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7)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8)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삭 제>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u>행정안전부</u> 등 감독 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20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5)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

현 행	개 정 안
<p>II. (생 략)</p> <p>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p>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1점)</p> <p>1) (생 략)</p> <p>2) (생 략)</p> <p>- BIS 자기자본비율 (7점)</p>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7점)으로 평가</p> <p>-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p> <p>-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p> <p>- <u>원화유동성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1)</u></p> <p>※ (생 략)</p> <p>※ 금융감독원, <u>안전행정부</u>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p> <p>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p> <p>(생 략)</p>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p> <p>(생 략)</p> <p>다. (생 략)</p> <p>라. <u>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u> (3점)</p>	<p>II. (현행과 같음)</p> <p>1. ----- (25점)</p> <p>가. ----- (8점)</p> <p>나. ----- (17점)</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6점)</p> <p>※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으로 평가</p> <p>-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p> <p>-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p> <p><삭 제></p> <p>※ (현행과 같음)</p> <p>※ -----, <u>행정안전부</u>-----</p> <p>-----</p> <p>-----</p> <p>-----</p> <p>2. ----- (20점)</p> <p>가. ----- (7점)</p> <p>(현행과 같음)</p> <p>나. ----- (6점)</p> <p>(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u>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u> (3점)</p>

현 행	개 정 안
<p>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p>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p>
<p>3. 국민의 이용 편의성 (20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5점)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 입금 수납 처리능력 (7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8점)</p>	<p>3. ----- (18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 ----- 나. ----- (5점) 다. ----- (6점)</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3점)</p>	<p>4. ----- (28점) 가. ----- (6점) 나. ----- (8점) 다. ----- (8점) 라. ----- ----- (6점)</p>
<p><신 설></p>	<p>※ II-3, 4의 지방세에는 제외수입을 포함</p>
<p>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9점)</p>	<p>5. ----- ----- (7점)</p>

현 행	개 정 안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점) 나. 구와의 협력사업 계획 (4점)</p> <p>※ <u>II-3, 4의 지방세에는 세외수입을 포함</u></p> <p><신 설></p>	<p>가. (현행과 같음) 나. ----- (2점)</p> <p><삭 제></p> <p>6. 그 밖에 사항 (2점) 가. <u>녹색금융 이행실적 (2점)</u> <u>금융기관이 탈석탄 투자 선언을 하였는지와 그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u></p>